

[년도]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

①업소명		②소재지		
③대표자		④업종		⑤사업자 등록번호
⑥건축허가 (신고)번호			⑦공사명	
⑧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내용				

⑨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 방법 및 용도

건설폐기물의 종류	처리시설		규격	용도	생산량 (톤)	용도별 사용량 (톤)
	시설명	시설용량 (톤/일)				
합 계						

⑩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구매방법 및 용도

구매업체 현황		규격	용도	구매량 (톤)	용도별 사용 량 (톤)	의무사용 해당여부
업체명	인증여부					
합 계						

⑪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구매방법 및 용도

구매업체 현황(업체명)	용도	구매량 (톤)	용도별 사용량 (톤)
합 계			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작성요령

1. ⑧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‘해당하지 않음’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⑨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건설오니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,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⑨, ⑩란 중 규격은 5mm, 6mm~25mm, 26mm~50mm, 51mm~75mm, 76mm~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,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4. ⑨, ⑩, ⑪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, 도로 보조기층용, 콘크리트용,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,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, 아스팔트 콘크리트용,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, 노상용, 노체용,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, 성토용, 복토용, 매립시설의 복토용, 벽돌, 블록, 도로경계석, 배수로용,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